

의안번호	2220148
의 퇴 인	박용갑 의원
회 답 일	2026. 8. 25.
추 계 번호	26A3750
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
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1,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
년간 총 4억 1,500만원(연평균 8,300만원)으로 추계됨
 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
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
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 획의 수립(제25조의3)	415	—	—	—	—	415	83

주: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
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제3항(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)	○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-1.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-2.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 및 활용 전략 -3. 산업계, 학계, 연구계,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-3의2. <u>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</u> -4.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(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-5.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(危害) 방지 방안 -6.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-7.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-8.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-9.~16.(생략) ※ 개정안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내용에 “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려는 것임	의무규정
2	안 제25조의3(지식재산 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) 신설	○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-1.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-2.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·운영·해제 등의 기본방향 -3. 지식재산클러스터 참여 지식재산관련기관의 역량 강화·특화, 상호 연계활동 지원 -4. 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○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25조의4(지식재산 클러스터의 조성·운영 등의 지원) 신설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·운영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식재산클러스터에 입주한 지식재산관련 기관과 그 지원시설의 역량 강화·특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(제3항) -1.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 -2.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-3.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-4.~7. (생략)	재량규정
	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하여 국유·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,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		○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하여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제1항·제35조제1항·제46조제1항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·제21조제1항·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,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25조의5(지식재산 클러스터 전담기관의 지정 등) 신설	○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조성·운영 및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식재산클러스터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조제3항(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－ 지식재산청은 “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(7012-301)” 사업의 예산(2026년 기준 32억 1,600만원)으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, 기본계획 수립 범위가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지식재산 클러스터 조성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이를 추정하기 어려움
2	안 제25조의3(지식재산 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) 신설	○	—
3	안 제25조의4(지식재산 클러스터의 조성·운영 등의 지원) 신설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－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식재산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, 전담기관 운영 방안 등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여 현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4	안 제25조의5(지식재산 클러스터 전담기관의 지정 등) 신설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·운영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및 조세 감면 등이 추진되고, 지식재산클러스터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비 등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25조의3 신설)에 대해서만 추계함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25조의3 신설)

- 안 제25조의3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은 개정안 시행 첫 해인 2027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것으로 가정
 - 제8조제1항에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¹⁾
- 유사 사례를 참고할 때,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2027년에 4억 1,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- 유사 사례로 “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(5억 6,000만원, 2017년 수행)”, “물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(2억 7,000만원, 2014년 수행)” 등이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억 1,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2]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(제25조의3)	415	—	—	—	—	415	8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2012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('22~'26)이 수립되어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